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73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김기표 · 박선원 · 위성곤
윤준병 · 전용기 · 이학영
박정현 · 백혜련 · 신영대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음.

다만,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인을 위해서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서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구속 중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권을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속 중인 피의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00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第200條”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32제1항 및 제218조의33제1항 중 “제200조”를 각각 “제200조제1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생략) <u><신 설></u>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구속 중인 피의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被疑者가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第200條의 規定에 의한 出席要求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管轄 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司法警察官은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の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	第200條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 ----- -----제200조 제1항----- ----- ----- ----- ----- ----- ----- ----- ----- -----

捕할 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 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 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第 200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다. ② ~ ⑤ (생 략)	----- . ----- ----- ----- ----- -----제 200조제1항-----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